

채용 공고

2023년 23차 정규직 취사원 채용

통영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**정규직 취사원**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.

1. 채용부문 및 인원

구분	채용직종	직무	인원	지원 조건	비고
정규직	고용원 (취사원)	구내식당 취사업무 등	1명	• 병원식당 취사 업무 가능한 자	

※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

2.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※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(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)
- ※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: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
(신체검사는 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)

3.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

○ 서류전형 평가 기준

[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]

구 분	내 역
조리 관련 자격	-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•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• 조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
사회봉사 활동	- 봉사활동시간 30시간 이상 * 헌혈유공장(회장표창)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,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* VMS(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), 1365 자원봉사포털,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(DOVOL),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*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
RCY경력	-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

표창	- 대통령, 국무총리, 대한적십자사 회장, 장관,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*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하며 RCY 표창은 제외함	
우리사 경력	- 대한적십자사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 * 우리사 경력은 관련 분야(취사 업무)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(비정규직 경력 포함) *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 불인정	
정보사무분야 자격증	상위	-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
	하위	-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 1급(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)중 1개 자격증 소지자

※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중복 소지시 상위 자격 1종에 대해서만 적용, 동일 등급 내 자격증이 복수일 경우 1종에 대해서만 적용

○ 우대사항

-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
-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

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

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

: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

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

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

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

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

: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

○ 서류전형 평가기준(자기개발실적 점수) 반영 유의사항

- 학력, 성별, 연령 제한없음(단,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)

-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

-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, 봉사활동 실적, RCY 경력, 표창 및 우리사 경력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
*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,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

-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

- 대한적십자사 경력은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인정함

※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을 포함

	※ 홈페이지 안내 - 원서접수(대한적십자사) : https://www.redcross.or.kr/recruit - 전형별(서류전형, 면접심사 등) 합격자발표(통영적십자병원) : http://rch.or.kr/web/rchtyoung/bbs/employment ※ 바로가기-인재채용  공지 * 원서 접수 및 합격자발표(서류 및 면접심사 등) 사이트가 다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기타 유의사항	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○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 ○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접수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 ○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○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○ 응시원서 접수 결과,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예비합격자 포함) 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. ○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면접성적 순에 의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며,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충원합니다. (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0%) ※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: 최종합격자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※ 최종 채용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○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문의처	통영적십자병원 총무팀 채용담당자 (☎ 055-640-1772) ※ 문의 가능시간 (토,일,공휴일 제외) 평일 : 08:30~17:30
2023. 11. 17. 대한적십자사 회장	